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12. 9.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 11. 13.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0. 11. 13.

다. 상정일자: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건설위원회(2020.12.9.)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가. 제안이유

재활용품 수집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안전용품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집활동을 위해 필요한 운반 장비 추가 지원의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O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지원하는 안전용품 종류의 구체화 (안 제7조제1항)
-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위한 각종 운반 장비 지원 추가 (안 제7조제1항)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 본 일부개정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안전용품의 종류를 구 체화하고, 운반 장비 추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O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에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지원하는 안전용품 종류의 구체화,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위한 각종 운반 장비 지원 추가에 관한 내용임.

O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보호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능률 향상을 위한 지원 물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원 대상인 지역 내 재활용품 수집인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고령자로,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문제점에 대비하고 지속적인 안전수칙 및 교통사고 예방법 등 교육을 통한 인지능력 강화가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기 타: 없 음